

##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

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제한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하며,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(도시재생과, ☎042-608-6873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.

2018년 11월 16일
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

다

1. 제한지역 : 대덕구 연축동 일원 (약25만㎡)
2. 제한사유
  - 가. 연축동 일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공공주택·유통단지 및 행정타운 조성 등 복합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으로
  - 나.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함으로써 이중투자와 난개발 방지 및 장래 도시발전 방향에 부합되는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함
3. 제한대상
  - 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
    - 건축물의 건축, 공작물의 설치, 토지의 형질변경, 토석의 채취, 토지분할 및 물건의 적치 행위 등
  - 나.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2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가능한 개발행위
    -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, 공작물의 설치, 토지의 형질변경, 죽목(竹木)의 벌채, 토지의 분할,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

#### 4. 제한제외 대상

- 가. 개발행위 허가제한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를 받은 행위 및 동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으로서 종래에는 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
- 나.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까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
- 다.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·옹벽 및 사방시설, 방재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
- 라.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
- 마.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
- 바. 가설건축물의 설치 등 해제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행위
- 사. 그 밖에 해제지역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

5. 제한기간 : 고시일로부터 3년간

6. 관계도면 : 게재생략. 끝.